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0호로 2022년 11월 10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표창장 및 공적심사 의결서 서식을 정정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 공적심사 의결서를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표창장 서식 변경에 관한 사항(별지 2호서식)

나. 공적심사의결서 서식 변경에 관한 사항(별지 6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과 관련한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지 2호서식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표창장 서식으로 디자인을 개선하여 표창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
- 안 별지 6호서식은 공적심사의결서 서식으로 공적심사요구자의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안건, 훈격 등의 사항을 추가함.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서명의 갯수를 위원회 위원수에 맞춤.

○ 검토결과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하는 표창 수여에 대하여 관련 서식 준비를 위한 개정이므로 법률상 문제없는 입법조치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 10. 8.>